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93
----------	------

2024년 12월 13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의 15명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- 상정일자 :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옥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학업 스트레스, 또래 관계 문제,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- 우울증,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학습 능력 저하,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, 정신질

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.

- 또한,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감·편견 등으로 인해,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.
-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,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,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-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·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또한,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2조2제1항)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2항)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

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입법예고 (2024.10.23.~10.27.) 결과 : 의견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저출산 문제로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우울증을 진료받은 18세 미만 아동수는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6~11세 아동 중 우울증을 진료받은 아동수는 2018년도 1,849명에서 2022년 3,541명으로 91.5% 급증하였음¹⁾.
-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,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- 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(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)
 -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

1) 김병규 기자, 연합뉴스, '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...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', 2023-09-27

	법」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-	---

-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2)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2조의2제1항은 이러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함으로써 법적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□ 지원사업 (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 아동 심리·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.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

2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	비스 연계 3.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·정보제공 4.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5.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 6.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-	--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³⁾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
 - 2023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심리·정서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기존의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있음이 지적되었음⁴⁾.
- 안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△아동 심리·적성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진단프로그램, △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, △보호자 상담 및 교육 제공, △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4) 서울시여성가족재단(‘23.7~’23.12.),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, p.212.

맞춤형 아동 심리 지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- 현재 아동의 심리·정서 서비스는 학교⁵⁾나 고위험군 대상의 지역 정신건강 전문기관⁶⁾에서 주로 담당해옴에 따라 일반 아동에게는 검사 후 충분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공급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, 위클래스(교육청)의 경우 아동 수 대비 교사 수가 적고 외부 상담기관의 이용횟수가 한정되어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⁷⁾.
- 따라서 아동의 심리·정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(아동·보호자)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지원사업 (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5) Wee클래스(학교內, 서울 기준 초등학교 中 202개소), Wee센터(교육청, 서울 기준 26개소) - 학교부적응, 학교폭력 등 관련 개인상담 및 치료(「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)

6)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서울 기준 25개소) - 개인상담(일탈 등) 및 복지지원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), 정신건강복지센터(서울 기준 25개소) -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상담 및 치료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)

7) 서울시여성가족재단(‘23.7~’23.12.),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, p.221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체계적인 아동 심리·정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, 이를 위해 안 제12조의2제2항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
3 종합 의견

-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아동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등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겪는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상담·치료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등 대책 강화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.
-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- 아울러 기존의 학교나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

이용자(아동·보호자)가 양질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김길영,
김영철, 김용호, 김태수,
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
유만희, 이경숙, 이원형,
황철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학업 스트레스, 또래 관계 문제,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- 우울증,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학습 능력 저하,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, 정신질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.
- 또한,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감 편견 등으로 인해,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.
-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,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,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-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.
- 또한,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2조2제1항)
- 나.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2항)
- 다.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,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 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아동 심리·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2.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
3.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·정보제공
4.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
5.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아동 심리·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.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 3.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·정보제공 4.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5.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 6.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「서울특</p>

제12조의2 (생략)

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의3(현행 제12조의2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	○	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 발생 ⇒ 5년 총비용 9,660,354천원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(안 제12조의2)
 -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비용

나. 전제

-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기관(센터) 위탁을 전제
 - (인 건 비) 센터장, 상담/치료전문가, 행정인력을 전제
⇒ 기본급, 제수당, 퇴직급여 총당금, 사회보험료 소요 전제
 - (운 영 비) 사무관리비, 회의운영비, 특근매식비, 임차료¹⁾,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,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, 여비 등이 소요됨을 전제
 - (사 업 비) 온라인 심리검사, 체험형 마음탐색, 맞춤형 프로그램,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, 심화검사, 부모교육, 진로체험 프로그램, 전문자문단, 유관기관 네트워크, 홍보비, 개소식 등이 소요됨을 전제
 - (조 성 비) 센터 리모델링비²⁾, 물품구입비³⁾, 개소식 비용 발생을 전제(1차년도에 한해서 발생)
-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(1차년도는 센터 개소시기에 맞춰 4개월분만 추계)
 - 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

1) 정수기, 복합기, SW사용료 등

2) 안내데스크/대기공간, 체험형 마음탐색 부스, 개인상담실, 소그룹 프로그램실, 마음활짝 힐링공간, 행정공간(센터장실, 사무실, 회의실) 등 조성비용

3) 사무가구 제작 및 설치, 업무용 전자기기, 기타 전자제품 구매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9,660,354천원(연평균 1,932,071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위탁센터 조성비용(안 제2조의2)	1,138,542	-	-	-	-	1,138,542
	○ 위탁센터 운영관리비(안 제2조의2)	655,524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8,521,812
	소계(a)	1,794,066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9,660,354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1,794,066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9,660,354

주 :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(안 제12조의2)

-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 = 9,660,354천원(연평균 1,932,071⁴⁾천원)

= ①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 + ② 인건비 + ③ 운영비 + ④ 사업비

= ① 1,138,542천원 + ② 4,004,390천원 + ③ 791,622천원 + ④ 3,725,800천원

○ 연도별 소요비용(5개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	
지출	○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	1,138,542	-	-	-	-	1,138,542	
	○ 위탁센터 운영관리비	인건비	308,030	924,090	924,090	924,090	924,090	4,004,390
		운영비	60,894	182,682	182,682	182,682	182,682	791,622
		사업비	286,600	859,800	859,800	859,800	859,800	3,725,800
□ 총 비용		1,794,066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1,966,572	9,660,354	

4) 9,660,354천원(추계기간 5년 총비용) ÷ 5 = 1,932,070.8천원(≒1,932,071천원)

①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(1차년도만 발생)

= 1,138,542천원
= 리모델링비 + 물품구입비 + 개소식 행사비
= 1,048,000천원 + 78,000천원 + 12,542천원

② 인건비(매년 발생)

- 1차년도(4개월⁵⁾) 연평균 비용
= 308,030천원
= 기본급 + 제수당 + 퇴직급여 충당금 + 사회보험료
= 169,764천원 + 57,586천원 + 56,838천원 + 23,842천원

-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
= 924,090천원
= 기본급 + 제수당 + 퇴직급여 충당금 + 사회보험료
= 509,292천원 + 172,758천원 + 170,514천원 + 71,526천원

③ 운영비(매년 발생)

- 1차년도(4개월) 연평균 비용
= 60,894천원
= 사무관리비 + 회의운영비 + 특근매식비 + 임차료 + 공공요금 등 + 인쇄물 등 + 여비
= 26,585천원 + 3,904천원 + 4,212천원 + 6,000천원 + 14,537천원 + 3,096천원 + 2,560천원

-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
= 182,682천원
= 사무관리비 + 회의운영비 + 특근매식비 + 임차료 + 공공요금 등 + 인쇄물 등 + 여비
= 79,755천원 + 11,712천원 + 12,636천원 + 18,000천원 + 43,611천원 + 9,288천원 + 7,680천원

④ 사업비(매년 발생)

- 1차년도(4개월) 연평균 비용
= 286,600천원
= 프로그램 등 운영비용 + 홍보비
= 277,600천원 + 9,000천원

-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
= 859,800천원
= 프로그램 등 운영비용 + 홍보비
= 832,800천원 + 27,000천원

5) 2025년 개소예정이므로 4개월간 비용만 책정